특 허 법 원

제 2 5 - 2 부

판 결

사 건 2022나2213 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 확인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2. 주식회사 C

대표자 사내이사 D

3.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서령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지

피고, 항소인 G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표이사 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래, 담당변호사 문린, 민현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19가합578947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11.

판 결 선 고 2023. 9. 14.

주 문

-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및 [별지2] 기재 각 확인대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기재 확인대상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 법원이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였는데, 원고들이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적외선 가열 조리기

-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8. 1. 18./ 2008. 5. 26./ 제833966호
- 3) 청구범위1)(이하 청구항별로 '이 사건 제()항 발명'이라 한다)2)

【청구항 1】상면 중앙에 <u>관통형</u> 축공(11)이 형성되고, 일측에 전원을 제어하는 스 위치(15)가 구비된 **받침대(1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와;

상면에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원판형 용기로서, <u>솔뚜껑을 뒤집어 높은 형태로</u> <u>아래로 볼록하고</u>, 하면 중앙에는 상기 축공(11)에 분리 가능하게 삽입되는 축돌기(21) 가 형성되어 있고, <u>상기 축돌기(21)와 상기 축공(11)의 삽입 결합에 의해 상기 받침대</u> (10) 상단에 회전가능하게 설치되며, 적외선을 받으면 가열되는 **회전팬(20, 2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과;

상기 받침대(10)의 일측에 세로 방향으로 설치되는 **지지대(30)**(이하 '구성요소 3' 이라 한다)와;

상기 지지대(30)의 상단에 설치되며, 전원을 인가받아 상기 회전팬(20,20')을 향하여 적외선을 조사하는 **적외선 조사부(40)**(이하 '구성요소 4'이라 한다);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외선 가열 조리기.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받침대(10)에는 내부에서 인출가능하게 기름받이통(12)이 더 포함되고, 상기 회전팬(20')의 축돌기(21)에는 축 방향으로 기름배출공(22)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

¹⁾ 원고 주식회사 A가 2021. 7. 5.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2021당2021호로 청구한 특허무효심판 사건에서의 피고의 2021. 8. 5.자 정정청구에 따른 것으로, 밑줄 친 부분이 정정으로 추가된 부분이다 (갑 제16, 17호증 참조). 한편, 특허심판원은 위 2021당2021호 사건에 대해 2021. 12. 14. 피고의 위정정을 인정하고, 위 원고의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을 제5호증 참조). 이에 대해 위 원고는 특허법원에 위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특허법원 2022허1148호로 제기하였는데, 특허법원은 2022. 10. 12.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갑 제17호증 참조), 위 원고가 2022. 10. 13. 위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²⁾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4항에 대한 기재는 생략한다.

는 적외선 가열 조리기.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받침대(10)와 회전팬(20,20')에는 전원을 이용하여 회전팬(20,20')을 자동으로 회전시켜 주는 회동수단(60)이 더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외선 가열 조리기.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적외선 조사부(40)는 지지대(30)에 상단에 설치되는 램프갓(42)과, 이 램프갓(42)의 내부에 설치되는 적외선램프(43)와, 상기 램프갓(42)의 내주면에 설치되는 단열 판(44)과, 상기 적외선램프의 하부에 분리가능하게 설치되는 내열유리판(45)으로 이루 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외선 가열 조리기.

4) 발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

까 기술 분야, 배경기술 및 해결과제

○ 본 발명은 적외선 가열 조리기에 관한 것으로,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적외선램프가 조리용 회전팬(Rotating pan) 위에 적외선을 직접 조사하여 음식물의 상부 및 내부를 익혀주고, 동시에 상기 적외선램프에 의해 가열된 회전팬이 음식물의 하부를 익혀 주므로서, 결과적으로 음식물의 표면을 태우거나 연기가 발생하지 않고 음식물의 상부와 내부 및 하부를 동시에 골고루 익힐 수 있으며, 나아가 조리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구조의 회전팬을 선택하므로서 음식물을 굽는 용도는 물론, 끓이는 용도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적외선가열 조리기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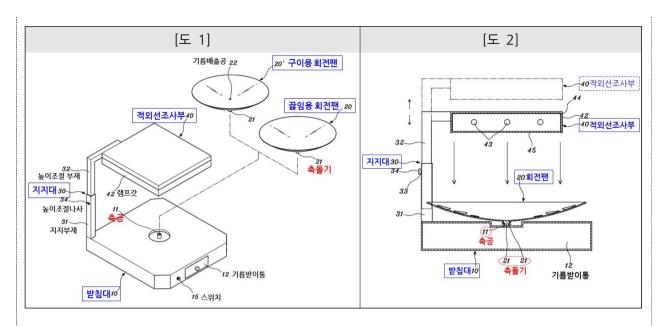
○ 먼저 국내특허등록 제0779225호(공고일자; 2007.11.28.)에는 외부가 석영관으로 구성 된 적외선램프와, 상기 적외선램프의 상단에 설치된 구이판과, 상기 적외선램프의 하단에 설치된 반사판으로 이루어지는 적외선 고기구이기가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 고기구이 기는 적외선램프가 구이판을 가열하고, 이 구이판이 고기의 하부만을 익혀주는 일방향 조리 기로서, 고기를 계속 뒤집어 주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나아가 음식물을 끓이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식별번호 <4>).

또한, 국내 실용신안등록 제314608호(공고일자; 2003.05.27.)에는 석쇠 상부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근적외선램프를 설치하고, 이 램프 상부에는 반사판을 설치한 육류구이기가 소개되어 있다. 이러한 육류구이기는 석쇠 위에 올려진 고기에 직접 근적외선을 조사하여 고기를 굽기 때문에 육질이 타지 않고, 내부까지 골고루 익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램프에서 발사되는 근적외선이 고기의 상부만 익혀주기 때문에 역시 일방향 가열에 불과하고, 나아가 근적외선램프의 높이 조절이 불가하며, 나아가 음식물을 끓이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등 구조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식별번호 <5>).

○ 이와 같이 종래에 소개된 적외선 가열 조리기들은 적외선램프에서 발사되는 적외선으로 구이판을 가열한 후, 이 구이판이 음식물의 일면 만을 직접 익혀주는 방식이거나, 적외선을 음식물의 일면에 직접 조사하는 일방향 가열방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구조적으로 적외선램프의 높이 조절이 불가하고, 끓이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용상 불편한 점이 많아 이를 가정용이나 업소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식별번호 <6>).

때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 본 발명은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받침대(10)가 구비되고, 이 받침대(10)의 상부에 회전팬(20,20')이 설치되며, 이 받침대(10)의 일측에 지지대(30)가 구비되고, 상기 지지대(30)의 상단에는 적외선조사부(40)가 설치되는 구조를 이룬다(식별번호 <13>).
- 먼저 **발침대(10)**는 내부에 수용공간을 가지며, 상면 중앙에는 관통형 축공(11)이 형성되고, 일측에는 전원을 제어하는 스위치(15)가 구비된다. 그리고, 구이용 회전팬(20')을 사용할 경우에는 받침대(10) 내부, 즉 상기 축공(11)의 하부에 기름받이통(12)이 배치된다. 상기 기름받이통(12)는 서랍 형태와 같이 받침대(10)의 일측면을 통해 인출가능하게 설치된다. 그리고, 상기 받침대(10)로 공급되는 전원은 외부 전원을 사용할 수도 있고, 배터리(Battery)를 사용할 수도 있다(식별번호 <14>).



- 상기 회전팬(20, 20')은 상면에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원판형 용기로서, 끓임용 회전 팬(20)과 구이용 회전팬(20')이 별도로 구비된다. 먼저 끓임용 회전팬(20)은 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치 솥뚜껑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아래로 볼록하고 하면 중앙에 축돌기(21)가 형성되고, 이 축돌기(21)는 상기 축공(11)에 분리 가능하게 삽입된다. 또한 구이용 회전팬(20')은 도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기 축돌기(21)에 축방향으로 기름배출공(22)이 관통된다. 그리고, 구이용 회전팬(20')을 사용할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받침대(10) 내부, 즉 기름배출공(22) 하부에 기름받이통(12)이 배치된다(식별번호 <15>).

본 발명에서 회전팬(20,20')은 축돌기(21)와 축공(11)의 삽입 결합에 의해 받침대(10) 상단에 회전가능하게 설치된다. 이를 위해 상기 축공(11)과 축돌기(21) 사이에는 회전팬(20,20')의 회전을 용이하게 하는 베어링(13)이 설치될 수 있다. 또한, 상기 회전팬(20,20')은 사용자들이 수동으로 회전시키면서 요리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으나,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원을 이용하여 회전팬(20)을 자동으로 회전시켜 주는 회동수단(60)을 설치할 수도 있다(식별번호 <17>).

- 한편, 지지대(30)는 받침대(10)의 일측에 세로방향으로 설치되며, 높이조절기능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지지대(30)에 대한 실시예를 들어보면, 도 3과 같이 받침대(10)의 일측에 설치되는 지지부재(31)와, 이 지지부재(31)의 내주면을 따라 승하강 가능하게 삽입 되는 높이조절부재(32)와, 그리고 상기 지지부재(31)에 형성된 관통공(33)에 나사결합되어 상기 높이조절부재(32)의 일측면을 고정하는 높이조절나사(34)로 이루어진다(식별번호 <19>).

- 마지막으로 상기 **적외선 조사부(40)**는 지지대(30)의 상단에 설치되며, 상기 회전팬(20)을 향하여 적외선을 조사하는 적외선램프(43)가 설치된다. 상기 적외선조사부(40)의 구조를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적외선램프(43)을 둘러싸는 램프갓(42)과, 적외선램프(43)의 상단,즉 램프갓(42)과 적외선램프(43) 사이에 설치되는 단열판(44)과,상기 램프갓(42)의 하단에 분리가능하게 설치되는 내열유리판(45)으로 이루어진다(식별번호 <21>).

상기 램프갓(42)은 적외선램프(43)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이 회전팬(20,20') 위로 집중되도록 모아주는 기능을 한다. 또한 상기 적외선램프(43)는 (중략) 상기 받침대(10)에 설치된 스위치(15)에 의해 적외선 조사량이 조절된다. 상기 단열판(44)은 적외선램프(43)의 열이 다른 곳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차단 및 반사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내열유리판(45)은 음식물의 국물이나 기름이 튀어 올라 적외선램프(43)를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하고, 나아가 적외선램프(43)의 조사되는 적외선의 명도를 완화하는 기능을 부여하여 사용자가 상기 적외선 때문에 시각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식별번호<2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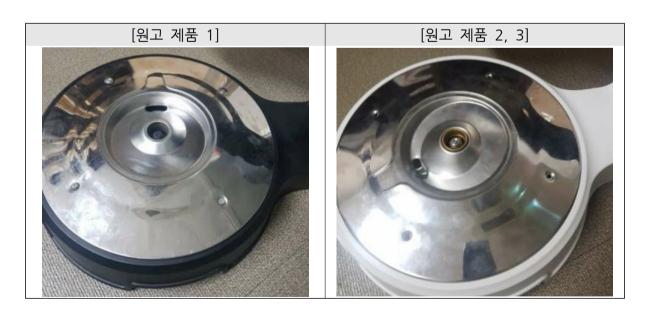
대 발명의 효과

○ 본 발명에 따른 적외선 가열 조리기는 적외선램프가 회전팬에 올려진 음식물에 적외선을 직접 조사하여 음식물의 상부와 내부를 익혀주고, 동시에 상기 적외선램프에 의해 가열된 회전팬이 음식물의 하부를 직접 익혀주는 양방향 가열방식으로서, 열효율이 높고, 음식물을 태우지 않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익혀주는 효과가 있다(식별번호 <9>).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적외선 가열 조리기는 음식물을 끓이는 용도에 적합한 끓임용 회전 팬과 굽는 용도에 적합한 구이용 회전팬이 각각 따로 구비되어 있어서, 생선이나 육류 등 기름기가 많은 음식물을 굽는 용도로는 물론, 전골이나 불고기 등 국물이 있는 음식물을 끓 이는 용도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식별번호 <10>). 마지막으로 본 발명에 따른 적외선 가열 조리기는 적외선램프의 높이 조절이 용이하고, 회전팬이 자동 또는 수동방식으로 자유롭게 회전하며, 특히 육류 구이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는 받침대 내부에 기름받이통이 배치되어있어서 특히 가정용이나 업소용으로 매우 편리하 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식별번호 <11>).

나. 원고들 실시제품

-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원고 주식회사 C와 원고 주식회사 E으로부터 [별지 3] 기재 원고들 실시제품들을 구매하여, "이지그릴 매직쿡"(이하 '원고제품 1'이라 한다), "이지그릴 원터치"(이하 '원고 제품 2'라 한다), "이지그릴 라이프" (이하 '원고 제품 3'이라 한다)란 이름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 2) 원고 제품 1, 2, 3을 비교해 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제품 1은 하부베이스의 금속원통기둥 상단이 덮개판의 관통구멍 밖으로 올라오지 않은 형상이고, 원고 제품 2, 3은 하부베이스의 금속원통기둥 상단이 덮개판의 관통구멍 밖으로 돌출 된 형상인 점에서 차이가 있고, 그 외 나머지 구성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6, 17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

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제품 1, 2, 3(이하 원고 제품 1, 2, 3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이라 한다)의 하부베이스에서 돌출된 금속원통기둥은 그 밑바닥이 다각축 키트, 모터, 플리스틱 키드 등에 의하여 완전히 막혀 있으므로,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관통형 축공'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장속항인 이 사건 제3항, 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2] 기재 확인대상채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 해석

가. 관련 법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45876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 222782, 222799 판결 등 참조). 한편,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출원 과정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이하 '대상제품'이라 한다)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대상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특허발명의 출원 과정에서 대상제품이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출원인이 출원 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보정이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특허등록 후 이루어지는 정정을 통해 청구범위의 감축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다2445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검토

-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상면 중앙에 관통형 축공이 형성되고, 일측에 전원을 제어하는 스위치가 구비된 받침대(구성요소 1)", "상면에 음식물을 담을 수있는 원판형 용기로서, 솥뚜껑을 뒤집어 높은 형태로 아래로 볼록하고, 하면 중앙에는 상기 축공(11)에 분리 가능하게 삽입되는 축돌기(21)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축돌기(21)와 상기 축공(11)의 삽입 결합에 의해 상기 받침대(10) 상단에 회전가능하게 설치되며, 적외선을 받으면 가열되는 회전팬(20, 20')(구성요소 2)"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위에서 본 증거들로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내용과 그 목적 및 이 사건에서의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구성요소 1의 받침대 상면 중앙에 형성된 '관통형 축공'의 기술적 의미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이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위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

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구성요소 1의 '관통형 축공'은 '밑바닥이 막히지 않고 뚫린 형상을 가지는' 축의 기능을 하는 구멍을 의미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의 '관통형축공'은 받침대 위쪽 겉면 중앙에 형성되는 것으로서, 회전팬 아래쪽 바닥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와 분리 가능하게 삽입·결합하여 축돌기에 형성된 기름배출공을 따라 기름배출이 가능한 것을 그 기술적 범위로 하고 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 가) 사전적으로 '관통(貫通)'은 '꿰뚫어서 통함'을 의미하고, '축공(軸孔)'은 '축의기능을 하는 구멍'을 의미하며, '상면(上面)' 및 '하면(下面)'의 사전적 의미는 각각 '물건의 위쪽을 이루는 겉면' 및 '물건의 드러난 부분의 아래쪽 바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u>상면 중앙에 관통형 축공이 형성되고</u>, 일 측에 전원을 제어하는 스위치가 구비된 <u>받침대</u>(구성요소 1)', '상면에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원판형 용기로서, 솥뚜껑을 뒤집어 놓은 형태로 아래로 볼록하고, <u>하면 중앙에는 축공에 분리 가능하게 삽입되는 축돌기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축돌기와 상기 축공의 삽입결합</u>에 의해 상기 받침대 상단에 회전가능하게 설치되며, 적외선을 받으면 가열되는 <u>회전판</u>(구성요소 2)'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구성요소 1, 2를 그 문언에 따라 해석하면, 구성요소 1의 '관통형 축공'은 '받침대 위쪽 겉면 중앙에 형성되고, 회전팬의 아래쪽 바닥면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가 분리 가능하게 삽입·결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피고는 원고 A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특허심판원 2021당 2021호) 절차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해 앞서 '제1.의 가.의 3)항'의 기재와 같이 밑줄 친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피고가 위 정정청구 당시 제출한 정정청구서(갑 제16호증)에 따르면, 구성요소 1에서의 '축공'을 관통형으로 한정한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와 축공 하부가 막혀있지 않고 뚫려 있는 형태로 도시된 도면을 근거로 청구범위를 감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피고 주장의 정정이유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와 도면의 내용 및 원고 A가 위 특허심판원 2021당2021호 사건에 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법원 2022허1148호 사건에서의 당사자들의 주장과 위 사건의 판결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구성요소 1의 받침대 상면 중앙에 형성된 '축공'을 관통형으로 한정한 것은, 축공의밑바닥을 막혀있지 않고 관통되는 형상으로 형성함으로써 축공에 구이용 회전팬(20')의축돌기를 삽입 결합하여 육류나 생선류 등을 구울 때 발생하는 기름을 축돌기에 형성된 기름배출공(22)을 따라 받침대(10) 내부에 배치된 기름받이통(12)으로 배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과 아울러, 축공의 밑바닥이 막혀있는 형상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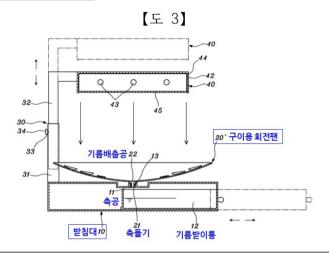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13> 본 발명은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받침대(10)가 구비되고, 이 받침대(10)의 상부에 <u>회전팬(20,20')이 설치되며</u>, 이 받침대(10)의 일측에 지지대(30)가 구비되고, 상기 지지대(30)의 상단에는 적외선조사부(40)가 설치되는 구조를 이룬다. 이때, 상기 회전팬(20,20')은 조리목적에 따라, 전골이나 불고기 등 국물이 있는 음식물을 끓이는 용도에 적합한 끓임용 회전팬(20)과, <u>육류나 생선류 등과 같이 기름이 배출되는 음식물을 굽는 용도에 적합한 구이용 회전 팬(20')이 별도로 구비</u>된다.

<14> 먼저 받침대(10)는 내부에 수용공간을 가지며, 상면 중앙에는 관통형 축공(11)이 형성되고, 일측에는 전원을 제어하는 스위치(15)가 구비된다. 그리고, <u>구이용 회전팬(20')을 사용할경우에는 받침대(10) 내부, 즉 상기 축공(11)의 하부에 기름받이통(12)이 배치된다</u>. 상기 기름받이통(12)는 서랍 형태와 같이 받침대(10)의 일측면을 통해 인출가능하게 설치된다. 그리고, 상기 받침대(10)로 공급되는 전원은 외부 전원을 사용할 수도 있고, 배터리(Battery)를 사용할수도 있다.

<15> 상기 회전팬(20,20')은 상면에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원판형 용기로서, 끓임용 회전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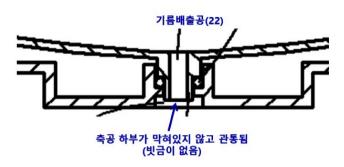
(20)과 구이용 회전팬(20')이 별도로 구비된다. 먼저 끓임용 회전팬(20)은 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치 솥뚜껑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아래로 볼록하고 하면 중앙에 축돌기(21)가 형성되고, 이 축돌기(21)는 상기 축공(11)에 분리 가능하게 삽입된다. 또한 구이용 회전팬(20')은 도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기 축돌기(21)에 축방향으로 기름배출공(22)이 관통된다. 그리고, 구이용 회전팬(20')을 사용할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받침대(10) 내부, 즉 기름배출공(22) 하부에 기름받이통(12)이 배치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청구서(제12~13쪽)

<u>정정사항 1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축공(11)을 '관통형'으로 한정한 것이므로 청구범위를</u> 감축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식별번호 <14>에는 "그리고, 구이용 회전팬(20')을 사용할 경우에는 받침대(10) 내부, 즉 <u>상기 축공(11)의 하부에 기름받이통(12)이 배치된다</u>."라고 기재되어있는 점, 식별번호 <15>에는 "이 축돌기(21)는 상기 축공(11)에 분리 가능하게 삽입된다.", "또한 구이용 회전팬(20')은 도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기 축돌기(21)에 축방향으로 기름배출공(22)이 관통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및 도 3에는 축공(11)의 아래와 위가 막혀있지않고 뚫려있는 형태로 도시된 점을 고려하면, 정정사항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의 정정입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3의 축공 부분 확대]

또한, 정정사항 1은 정정 전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포함되어 있던 축공(11)에 대해 그 형태를 '관통형'인 것으로 한정한 것이므로, 정정사항 1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정사항 1은 정정 요건을 만족하는 적법한 정정입니다.

4.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이 사건 제1, 3, 5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침해 여부

가.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특정

- 1)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18, 21, 2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상면 중앙에 금속원통기둥이 상향 돌출되어 있고, 상면일측에 기름받이공이 구비된 하부베이스, ② 하부베이스 상면을 덮으며, 중앙에 금속원통기둥이 관통되는 관통구멍과 그 일측에 기름받이공이 형성된 덮개판, ③ 상면에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원판형 용기로서, 하면 중앙에는 하부베이스의 금속원통기둥에 삽입되는 축돌기와 축돌기와 동축으로 축돌기의 외경보다 큰 위치에 원주방향으로 배열된 다수 개의 기름배출공이 형성된 회전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2)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하부베이스 중앙에 상향 돌출된 금속원통기둥 내부에는 다각축이 구비되어 있는데, 다각축은 금속원통기둥 아래에 설치된 모터와 연결되어 회전 동력을 전달받으며, 회전팬 하부 중앙의 축돌기에는 다각홈이 형성되어 위 다각

축과 분리 가능하게 결합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침해 여부 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구성요소 대비표

구성 요소	이 사건 제1항 발명	이 사건 원고 제품들
1	상면 중앙에 관통형 축공이 형성되고, 일측에 전원을 제어하는 스위치가 구비된 받침대	상면 중앙에 금속원통기둥3)이 상향 돌출되어 있고, 일측에 스위치가 구비된 하부베이스(받침대)로서, 금속원통기둥 내부에는 다각축이 구비되며, 상기 다각축과 연결되어 회전 동력을 전달하는 모터가 금속원통기둥 아래에 설치됨
2	상면에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원판형용기로서, 솥뚜껑을 뒤집어 놓은 형태로아래로 볼록하고, 하면 중앙에는 축공에분리 가능하게 삽입되는 축돌기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축돌기와 상기 축공의 삽입 결합에의해 상기 받침대 상단에 회전가능하게설치되며, 적외선을 받으면 가열되는 회전팬	상면에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원판형용기로서, 하면 중앙에는 상기 금속원통기둥에 삽입되는 축돌기와 다수 개의 기름배출공이 형성되어 있고, 위 축돌기에는 금속원통기둥의 다각축과 분리 가능하게 결합되는 다각홈이 형성되어, 다각축과 연결된 모터의 회전 동력에 의해 받침대 상단에 회전가능하게설치되며, 적외선을 받으면 가열되는 회전팬,
3	받침대의 일측에 세로 방향으로 설치되 는 지지대	하부베이스(받침대)의 일측에 세로 방향 으로 설치되는 지지대
4	지지대의 상단에 설치되며, 전원을 인가 받아 회전팬을 향하여 적외선을 조사하는 적외선 조사부	지지대의 상단에 설치되며, 전원을 인가 받아 상기 회전팬을 향하여 적외선을 조 사하는 적외선 조사부

³⁾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관통형 축공'에 대응되는 기술구성으로, ① 금속원통기둥 상단이 덮개 판의 관통구멍 밖으로 올라오지 않은 형상인 원고 제품 1에서는 '금속원통기둥의 상단에 겹쳐진 덮개

2) 구성요소별 구체적인 검토

가) 구성요소 1, 2

- (1) 구성요소 1, 2는 받침대와 회전팬에 관한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밑바닥이 막히지 않고 뚫린 형상을 가지는 축의 기능을 하는 구멍인 '관통형 축공'을 받침대 상면 중앙에 형성하여, 회전팬 하부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가 분리가능하게 삽입·결합하여 축돌기에 형성된 기름배출공을 따라 기름 배출이 가능한 것을 주요한 기술적 특징으로 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구성요소 1, 2에 대응되는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하부베이스(받침대) 및 회전팬'이 위와 같은 기술적특징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 (2) 구성요소 1의 '관통형 축공'에 대응하는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 등'은 그 내부에 다각축이 구비되어 있고, 회전팬 하부 중앙의 축돌기가 금속원통기등에 분리 가능하게 삽입되어, 축돌기에 형성된 다각홈이 위 금속원통기등 내부의 다각축과 결합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금속원통기등의 상단은 회전팬의 축돌기가 분리 가능하게 삽입 가능하도록 뚫린 형상을 가지고 있으나, 그 하단에는 다각축과 연결되는 모터 등이 배치되어 있어 금속원통기등의 밑바닥이 뚫린 형상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은 금속원통기둥의 아래에 모터 등이 설치되어 있는 이상, 구성요소 1과 관련한 기술적 특징, 즉 회전팬의 축돌기가 분리 가능하게 삽입·결합되는 금속원통기둥의 밑바닥이 막히지 않고 뚫린 형상을 가짐으로써, 축돌기에

판의 관통구멍 테두리 + <u>금속원통기둥</u>'이 그에 해당되고, ② 금속원통기둥 상단이 덮개판의 관통구멍 밖으로 돌출된 형상인 원고 제품 2, 3에서는 '<u>금속원통기둥</u>'이 그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피고의 2023. 6. 27.자 준비서면의 제1쪽 참조). 그러나 앞서 살핀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둥은 하부베이스(받침대) 상면 중앙에 돌출 형성되어 있고, 회전팬 아래쪽 바닥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와 분리 가능하게 삽입·결합하는 구성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관통형 축공' 구성에 대응하는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구성요소는 '금속원통기둥'이 된다고 봄이 옳다.

형성된 기름배출공을 따라 기름 배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기술구성을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제품들에서 금속원통기둥의 아래쪽에 위치한 모터 등을 제거하면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금속원통기둥 자체는 밑바닥이 막혀 있지 아니한 채 하부가 뚫려있는 구조이고, 이 사건 원고 제품들에서 부가적 구성인 "다각축이 구비된 모터" 대신 "기름받이통"을 배치함으로써 기름을 수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둥은 "관통형 축공"에 해당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은 모터의 회전 동력을 이용하여 회전팬을 자동으로 회전시켜 주는 것도 그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원고 제품들에서 모터 등의 일부 부품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위와 같은 기술적 특징이 제대로 표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을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가 모터 등을 임의로 제거하는 것이 쉽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분리하여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을 사용할 특별한 사유 등도 발견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모터 등을 임의로 분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와 대비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은 회전팬의 축돌기를 중심으로 원주방향으로 다수개의 기름배출공을 따로 형성하여 회전팬에서 고기 등을 구울 때 발생하는 기름을 회전팬의 기름배출공을 통해 배출하되, 덮개판과 하부베이스의 일측에 각 형성된 기름받이공을 통해 하부베이스의 아래에 위치하는 기름받이통으로 배출되는 구조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원고 제품들에서 모터 등을 제거하여 금속원통기둥의 밑바닥이 뚫린 구조로 변경하더라도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축돌기에 기름배출공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금속원통기둥의 바로 아래 기름받이통이 위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발명처럼 기름이 축돌기에 형성된 기름배출공을 따라 하부베이스의 내부에 배치된 기름받이통으로 배출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과 종합해 볼 때, 피고의 위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위에서 살핀 사정들과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구조와 그 형상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둥은 하부베이스까지 연장되어있는 구성이 아니어서 하단이 막혀있지 않고 상하로 뚫려있는 "관통형" 구조에 해당되므로, 위 금속원통기둥은 "관통형 축공"에 해당된다.'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도 이를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구성요소 3, 4

구성요소 3, 4는 받침대의 일측에 세로 방향으로 설치되는 '지지대'와 지지대와 지지대의 상단에 설치되며 전원을 인가받아 회전팬을 향하여 적외선을 조사하는 '적외 선 조사부'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원고 제품들 역시 지지대와 적외선 조사부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것이다.

3) 소결

앞서 살핀 바에 따르면,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이 사건 원고 제품들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이 사건 제3, 5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침해 여부

이 사건 제3, 5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는 항으로, 앞서 살핀 것처럼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이상,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이 이 사건 제3, 5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은 이 사건 제1, 3, 5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그 침해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2] 기재 확인대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이 이 사건 제1, 3, 5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2] 기재 확인대상채무가 부존

재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정당하고, 그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법원에 제출된 피고의 2023. 8. 18.자 참고서면과 그에 첨부된 자료 및 피고의 2023. 9. 6.자 참고서면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재판장 판사 우성엽

판사 임영우

판사 김기수

[별지 1]

확인대상채무

원고들이 [별지 3] 기재 원고들 실시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거나 위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가 피고의 특허(명칭: 적외선 가열 조리기,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08. 1. 18./2008. 5. 26./제833966호) 중 청구항 2, 4를 침해함을 원인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채무

- 1. [별지 3] 기재 원고들 실시제품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거나 위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 금지채무
- 2. 원고들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대리점, 판매점, 공장, 창고에 비치된 [별지 3] 기재 원고들 실시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완제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물건)과 위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설비 폐기채무. 끝.

[별지 2]

확인대상채무

원고들이 [별지 3] 기재 원고들 실시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거나 위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가 피고의 특허(명칭: 적외선 가열 조리기,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08. 1. 18./2008. 5. 26./제833966호) 중 청구항 1, 3, 5를 침해함을 원인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채무

- 1. [별지 3] 기재 원고들 실시제품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거나 위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 금지채무
- 2. 원고들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대리점, 판매점, 공장, 창고에 비치된 [별지 3] 기재 원고들 실시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완제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물건)과 위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설비 폐기채무. 끝.

[별지 3]

원고들 실시제품

순번	제품명	사진
1	이지그릴 매직쿡	Friyl, Mill
2	이지그릴 원터치	Regulation
3	이지그릴 라이프	Exysens (constant)

끝.